

전 자 장 치 부 착 등 에 관 한 법 률
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피부착명령자(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)가 출소하기 전에도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과, 추가,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644호, 2020. 12. 15. 공포)됨에 따라, ‘준수사항 추가·변경·삭제 신청서’ 및 ‘준수사항 추가·변경·삭제 청구서’의 제목과 내용 등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 중 “법 제14조의2”를 “법 제14조의2, 제14조의3”으로, “준수사항의 추가”를 “준수사항의 부과·추가”로, “법 제14조의2”를 “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”으로, “준수사항의 추가”를 “준수사항의 부과·추가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4호의3서식 제1쪽의 제3호 중 “무직이면 전직과 우편물 수령지를 기재한 후 3번으로 가십시오”를 “무직이면 전직을 기재한 후 5번 가족사항으로 가십시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

하여 사용해야 한다.

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것으로 본다.

○ ○ 보호관찰소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제 호

년 월 일

수 신 ○ ○ 지방검찰청 검사장

발 신 ○ ○ 보호관찰소장

직인

제 목 []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, 준수사항의 []부과, []추가, []변경, []삭제 신청

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,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[]부착기간의 연장, []준수사항 부과, []준수사항 추가, []준수사항 변경, []준수사항 삭제를 신청합니다.

부착명령을 받은 사람	성 명	주민등록번호
	주 거 지	
	사 건 번 호	
원래 부착기간 (원래 준수사항)		
신청의 취지		
부착기간의 연장 (준수사항의 부과· 추가·변경·삭제) 을 필요로 하는 사유	별지 기재와 같음	
참고자료		

○ ○ 검찰청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사건번호 형제 호

년 월 일

수 신 ○ ○ 지방법원장

발 신 ○ ○ 지방검찰청

검 사 ○ ○ ○ (인)

제 목 []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, 준수사항의 []**부과**, []추가, []변경, []삭제 청구

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[]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, []**준수사항 부과**, []준수사항 추가, []준수사항 변경, []준수사항 삭제를 청구합니다.

부착명령을 받은 사람	성 명	주민등록번호
	주거지	
	사건번호	
원래 부착기간 (원래 준수사항)		
청구의 취지		
부착기간의 연장 (준수사항의 부과 · 추가·변경·삭제)을 필요로 하는 사유	별지 기재와 같음	
참고자료		

신고서(보석 피고인)

※ 신고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,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2쪽 중 1쪽)

성명 :	주민등록번호 : ※ 외국인의 경우 : 국적·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) ※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: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※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: 국적·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)
결정기관 :	결정일자 :

1. 주소·연락처(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지,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)

주민등록주소 :	실제 거주지(주민등록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) :	
☎(집전화번호) :	☎(집전화번호) :	
휴대전화번호 :	이메일 :	기타 연락처 :
(문자서비스 []동의, []동의안함)		

휴대전화 문자서비스 관련 유의사항

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, 수신된 각종 정보는 본인 책임으로 관리해야 하며, 휴대전화의 타인양도, 분실 등 본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수신된 문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음.

대상자: (서명 또는 인)

귀하의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실이 공개된 범위	[]가족, []직장, []학교, []친구, []이웃, []친인척
우편물수령지	[]주민등록주소, []실제 거주지, []판결정문주소, []직장주소, []기타 주소 (기타 주소:)

2. 죄명

사범	죄명
----	----

3. 직업(무직이면 전직을 기재한 후 5번 가족사항으로 가십시오) 전직(前職):

직업:	직장주소:
직장명:	☎전화번호:

4. 직업 상세사항

부서:	근무형태:	급여액:	근무시작일:
직위:	[]주간, []야간, []2교대, []3교대, []기타()	만원	년 월 일
근무시간대 :		급여형태:	
: ~ : (시간/일)		[]연봉, []월급, []주급, []일급, []시급	

5. 가족 사항

혼인 관련	[]미혼, []기혼, []동거, []별거, []이혼, []사별, []기타()
-------	--

가족 중 생계책임자:

관계	이름	나이	직업	연락처	비고

6. 차량 관련 사항

차량(원동기 포함):	차종:	차량번호:	보험가입:
[]있음, []없음	색깔:		[]책임, []종합, []무보험

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보호관찰(지)소장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부착기간의 연장 등 신청) <u>법 제14조의2</u>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<u>준수사항의 추가 · 변경 · 삭제</u> 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, <u>법 제14조의2</u> 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<u>준수사항의 추가 · 변경 · 삭제</u> 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	제10조의2(부착기간의 연장 등 신청) <u>법 제14조의2, 제14조의3</u> - ----- -- <u>준수사항의 부과 · 추가</u> ---- ----- ----- <u>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</u> ----- <u>준수사항의 부과 · 추가</u>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치료처우과	
연 락 처	02-2110-3857